

## 합 의 서

가해자와 피해자간의 (죄명 입력)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\*\*\*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[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 합의금액 기재] 가해자에 대하여 추후 민·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.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.[선택적으로 "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바입니다." 도 가능]

2000. 0. 0.

가 해 자 ○ ○ ○ (인)

피해자 △ △ △ (인)

\*\*참고: 합의서에는 피해자 측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부득이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라도 첨부하여야 합의서의 진위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음.